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434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9.

발 의 자:조명희·추경호·홍문표

박덕흠 • 성일종 • 김성원

배준영 • 하영제 • 황보승희

김용판 · 배현진 의원

(119]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률 중 어려운 한자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이에 어려운 한자어인 "굴토"를 "땅파기"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 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,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(안 제13조제1항제1호). 법률 제 호

6·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6 ·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"굴토(掘土)"를 "땅파기"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굴토한"을 "땅파기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손실보상) ① 국방부장관	제13조(손실보상) ①
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	
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	
다.	
1. 제9조의 조사・발굴에 따른	1
타인 토지등에의 출입· <u>굴토</u>	<u>땅파기</u>
<u>(掘土)</u> 등 일시 사용이나 농	
작물·과수 등의 피해에 따	
른 손실. 다만, <u>굴토한</u> 후 원	<u>땅파기한</u>
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···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